

[별표 9] <개정 1995.8.31>

검사의 유효기간(제33조제1항관련)

검 사 의 종 류	검 사 의 유효 기 간
용 접 검 사 구 조 검 사 개 조 검 사	없 음
설 치 검 사 설 치 장 소 변 경 검 사	1. 보일러 : 1년, 단, 운전성능부문에 대하여는 3년 1월 2. 압력용기 : 2년 3. 철금속가열로 : 2년
계 속 사 용 검 사	1. 보일러 : 1년 2.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: 2년

- 비고 : 1.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의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년으로 할 수 있다.
2. 설치검사·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계속사용검사후 개조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개조검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